

4단계 BK21 미래인재양성사업

중앙대학교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양성 사업팀

운영규정

제정 2021년 3월

개정 2022년 2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훈령 제353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시행2020. 11. 27.제정)』에 의거 추진하는 BK21 FOUR에 참여하는 중앙대학교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팀 목표) 본 사업팀은 교육부 BK21 FOUR사업의 지원을 받아 우리사회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물리광화학 분야 지식 및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연구 인력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이 사업팀은 중앙대학교 BK21 FOUR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이라 한다(이하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 또는 "본 사업팀"이라 한다).

제4조(사업기간) 본 사업팀의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7년간으로 하며, 각 연도 사업비 집행, 대응 자금 확보 및 집행, 연구실적 등의 산정기간은 학사력에 맞추어 매년도 3월 1일 부터 차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사업팀의 조직)

- ① 본 사업팀에는 팀장과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사업팀 행정업무지원을 위하여 본 사업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직원과 행정조교를 둔다.

제6조(임원)

- ① 사업팀장이 사업팀 참여교원 중 부단장과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 ② 사업팀장은 사업을 총괄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팀장의 교체는 이직 등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팀장은 BK21 FOUR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SRC, ERC, NCRC, IT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책임자를 겸직할 수 없다. 단, 6개월 이내에 사임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7조(참여교수의 선발, 변경 등) 참여교수의 선발 및 변경 등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① 신규 참여 교수 선발: 지원자 제반 실적의 질적 및 정량 평가 결과가 기존 사업 참여 교수들의 평균 점수를 상회 할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지원자를 신규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 ㉞ 참여교수의 연구업적 평가항목은 4단계 BK21 사업 연구업적 평가 방식에 준한다.
 - ㉟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 평가항목은 논문, 특허, 연구비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여도 및 실적의 우수성을 가중치를 두어 총합을 산정한다.
- ② 사업팀장은 연구실적 평가 및 사업의 참여도를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 ㉞ 연구실적이 저조한 경우: 참여교수의 2년간 총 연구실적이 주저자 논문 1편 이하인 경우 해당교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㉟ 사업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 참여교수의 사업 참여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 과반의 동의를 얻어 참여교수에 대한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체할 수 있다.

제8조(적용범위) 본 사업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예산 사용 지침

제1절 예산집행과 결산

제1조(예산편성)

- ① 사업팀장은 교수업적 요약서, 참여 학생 실적요약서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고 예산을 조정하여 사업팀 예산을 편성한다.
- ③ 사업팀장은 예산안을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사업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④ 예산편성에는 다음 항목들을 포함한다.
 - ㉡ 대학원생지원비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 ㉢ 신진연구인력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
 - ㉣ 국제협력경비 : 국제학술회의, 해외 학회 논문 발표, 해외 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 ㉤ 사업운영경비 :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전담직원 인건비 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 간접비 :
 - ㉠ 국고지원금의 5% 범위내에서 사업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 ㉡ 사업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각 연도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예산의 책임) 사업팀장은 사업팀 전체의 예산편성, 조정, 통제 등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책임을 진다.

제3조(내부통제)

- ①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팀장이 승인한 예산에 한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집행 시 사업팀장은 이의 집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② 사업팀장은 당해 사업기간이 종료, 결산 후 예산이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사업계획과 다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각 참여교수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사업비는 매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단, 이월금은 국고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한다.

제4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항목 간의 조정 및 신설을 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전용) 편성, 확정된 예산의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전용할 수 있다. 예산편성 시 전용을 제외한 과목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과목으로는 전용할 수 없다.

제6조(결산)

- ① 사업팀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결과를 포함하여 사업 결산 및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다.
- ② 사업결산 및 정산서 작성 서식은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절 사업비 관리 지침

제1조(사업비 세입과목) 사업비의 세입과목은 국고지원금, 산업체 등 교외대응자금, 교내 대응자금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국고지원금 : BK21 FOUR사업비로 정부가 매년 출연하는 사업비

제2조(사업비 세출과목)

- ①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출과목은 대학원생연구장학금, 인건비(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국제화 경비 및 사업팀운영경비(교수성과급, 전담직원인건비 등), 교육과정개발비,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지원비, 간접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대학원생지원비 : 대학원생에게 지원되는 연구장학금
 - ㉢ 신진연구인력지원비 : 박사후연구원과 계약교수의 인건비(단, 인건비에 대한 법정 부담금은 국고 지원금에서 편성 불가)
 - ㉣ 국제협력경비 : 해외 학회 논문 발표, 해외연수, 해외 인턴십, 해외 저명학자 초빙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비
 - ㉤ 사업운영경비 : 사업팀장 및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전담직원 인건비 등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
 - ㉥ 교육과정개발비 : 교재개발비, 시계조사비 및 실험비 등 교육과정 개발 관련 제반 경비 편성
 - ㉦ 실험 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 소모성재료비, 창업, 취업지도, 산업체와의 산학협력 공동활동 경비편성(자문료, 강사료, 취,창업 관련 행사 개최비 등)
 - ㉧ 간접비 : 산학협력단 총괄 관리비

제3조(집행항목 비율 준수) 국고지원금 운영 시 당초 공고문 및 신청서식에 제시된 국고지원금 세출 과목별 항목과 편성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간접경비) 대학은 각 사업팀별 국고지원금의 5% 범위내에서 사업팀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운영 원칙)

- ① BK21 FOUR사업 국고지원금은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팀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집행, 관리하게 할 수 없다.
- ②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고지원금으로 구입한 도서 등에 대해서는 대학본부에서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검수,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대학에 귀속되어야 한다.
- ④ 대응자금을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시설비 및 교사 건축비 등으로 집행할 수 없다.
- ⑤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내부 품의서, 지출원인 행위서 등 집행 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가 보관되어야 하며, 집행 일계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이월)

- ①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고지원금 및 대학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사업비 (당해년도 예산액+이월액)의 15% 이내로 차기 회계연도로의 이월을 허용한다.
- ② 국고지원금 이월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년도 국고지원금 교부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국고지원금 이월 정도는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제7조(참여대학원생지원비)

- ① 참여대학원생지원비는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장학금으로 본다. 다만 지급 형태에 있어서는 학기별, 월별, 분기별 지급 등이 가능하다.
- ②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과정생 월 70만원, 박사과정생 월 130만원, 박사수료생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사업팀 내 운영위원 회의를 통한 협의 후 기준 단가 이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 ③ 참여대학원생 지원비는 개인별 계좌 입금의 형태로 지원되어야 한다.
- ④ 참여대학원생 중 사업팀에 참여하는 지도교수 별 박사과정 1인, 석사과정 1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지도교수의 연구실적 및 사업단 기여도를 기준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추가적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도교수는 성적 및 실적을 기준으로 추가 지원 대학원생을 추천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단, 사업팀 참여교수 별 기본 지원 인원 부족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유동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8조(참여대학원생의 타연구과제 참여 등)

- ①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1 사업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팀장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보조원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수업과 연구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장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단,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③ 참여대학원생은 해당 강의의 세부 내역(학교, 시간, 과목 등)을 사업팀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신진연구인력지원비)

- ① 신진연구인력지원비와 계약교수 인건비는 4단계 BK21 사업 최저 인건비 이상으로 한다. (단, 신진연구인력지원비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시 급여, 법정 보험, 퇴직금, 근무조건, 의무, 계약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신진연구인력의 채용과 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0조(신진연구인력의 강의 등)

- ① 박사후연구원은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팀 내의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시간 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② 계약교수는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팀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책임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국제협력경비)

- ① 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해외 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해외 석학 초빙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② 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을 동반하지 않은 참여교수 단독 해외 연수에는 집행할 수 없다.
- ③ 해외연수를 위한 학생 선발 등 운영에 관해서는 사업팀 자체 규정에 따른다.
- ④ 1개월 이상(30일 초과)의 해외연수생에 대해서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국제협력경비를 통한 지원비 외에 대학원생 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12조(기타사업운영경비)

- ① 국고지원금에서 편성되는 사업운영경비는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건비, 여비, 학술활동 지원비,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월정액 보직 수당은 국고지원금에서 편성, 집행할 수 없다.
- ③ 사업운영경비는 사업팀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④ 효율적 사업관리 추진과 연구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운영경비에서 성과급적 경비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참여교수간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⑤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3장 위원회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앙대학교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 및 자체 평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 1인, 참여교수 2인 총 3인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1인을 선발하여 사업팀장 유고 시 팀장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하고 팀장은 위원장이 된다.

제4조(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집행한다.

- ① 사업팀장은 위원장으로서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합의체이다.

제5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사업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② 발전적 사업팀 운영을 위한 계획 마련 및 운영 규정 정비
- ③ 사업팀 참여교수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참여교수의 기여도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위한 실제적 지표 마련
- ④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자체 경쟁 시스템 유지

제4장 신진연구인력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1절 계약교수

제1조(운영)

-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팀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 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계약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동안 논문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⑤ 계약교수는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팀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⑥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⑦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은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 등도 수행한다.

제2조(계약교수 선발 및 배정)

- ① 외국인 교수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사업팀 내 강의를 담당할 수 있는 계약교수 형태로 초빙한다.
- ② 계약교수 선발은 연구경력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하고,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계약교수 중 자교 학사학위 취득자의 비율과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의 비율이 각각 3분의 2 이내로 한다.(단 지원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 제외)

제3조(급여) 계약교수의 경우 급여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15일(법정휴가일수)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15일 초과할 경우 무급 휴가를 인정한다.

(장기 휴가일 경우 15일 초과 일 수 일할 계산하여 월급여에서 제외 후 지급)

제4조(논문) 계약교수는 연 1편 이상의 SCI(E)급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2절 박사후연구원

제1조(운영)

- ① 운영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팀이 자체적으로 초빙기간, 초빙목적, 지원급여액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신진연구인력 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계약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논문실적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④ 박사후연구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팀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 ⑤ 계약교수는 사업팀의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사업팀 내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므로 외부 시간강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의 장 또는 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 ⑥ 박사후연구원은 사업팀의 책임 하에 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 ⑦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은 BK21 FOUR 사업 참여교수의 직접적인 연구지원 및 참여대학원생의 기술적인 연구자문, 조언 등도 수행한다.

제2조(박사후연구원 선발)

- ① 박사후연구원의 선발기준은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구성 비율이 2/3를 넘지 않도록 한다. 자교는 중앙대학교 나노과학기술대학을 의미한다.

제3조(직무) 사업팀박사후연구원은 본 사업팀의 목표에 부합한 연구과제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다.

제4조(급여) 박사후연구원의 급여는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단, 급여는 퇴직금을 포함한다.)

15일(법정휴가일수) 유급 휴가가 가능하며 15일 초과할 경우 무급 휴가를 인정한다.

(장기 휴가일 경우 15일 초과시 일수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에서 제외 후 지급)

제5조(논문) 박사후연구원은 연 1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지원대학원생 선발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중앙대학교 생물리과학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 선발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운영위원회가 본 규정의 시행 및 운영을 담당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 ① 지원대학원생은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중 4단계 BK21 사업에서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지원하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 ② 사업팀 참여대학원생 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원생의 논문, 특허 및 학술발표 등 정량적인 실적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지도교수가 추천하며, 장학위원회에서는 추천대상 대학원생의 정량적 실적 및 지도교수의 정성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통해 지원대학원생을 최종 선발한다.
- ㉞ 지원대학원생 선발을 위한 정량적인 연구업적 평가항목은 4단계 BK21 연구업적 평가방식을 따른다.
- ④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연구실적 평가항목은 논문, 특허, 학술발표 부문으로 세분화하고, 기여도 및 실적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총합을 산정한다.

* 장학생 선발 평가표<개정 2021.04.01.>

예)202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평가표

지 도 교 수		교수명 (인)									
구분		수학능력 연구능력 및 성실성(70점)									
		학점(40점)		SCI논문 발표 실적(20점)		학회 발표 실적(10점)					
		*대학원신입생 (학사과정) *재학생 (20년2학기) *박사후보생 (박사과정생)		①논문명 ②저널명 (호,페이지,연도) ③저자명		2020년9월~2021년2월 학회명 (년월일) 포스터 구두 배경 구분 배경 배경					
예)총괄팀	학부사 총괄, 학사과정	4.33		1.Effect of Material and Shape of Nanoparticles on Hot Carrier Generation JACS Photonics JID, 3260, 2020 3.Minh Huynh, 총괄팀, 교수명		대한화학회 주계학술대회 (2020.10.20-21)	1				

제5장 사업팀 직원

제1조(임용) 사업팀 직원의 임용은 사업팀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용한다.

제2조(신규채용)

- ① 사업팀 직원을 신규채용 시 업무 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검정하여야 한다.
- ② 사업팀 직원의 임용 방법과 결격 사유와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직원 인사관리 지침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사업팀 직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임용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산학협력과 관련한 전문 인력은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

제3조(정원) 사업팀 직원의 정원은 사업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조(복무) 사업팀 직원은 학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사업팀장의 명을 받아 성실하게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사업팀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서 정하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센티브 금액은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징계 및 면직)

- ①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중앙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교육부 지역대학원 육성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제7조(퇴직금 지급) 사업팀 직원의 퇴직금 지급은 사업팀교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국제협력사업

제1조(목적)

- ① 본 사업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한국의 독창적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수준의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동 사업 추진에 있어 선진 외국대학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프로그램)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1. 해외학술회의 참가
2. 해외 장·단기연수
3. 외국인교수 초빙
4. 해외석학 초청 세미나
5. 국외대학과의 세미나 진행 및 국제학회 개최

제1절 대학원생 장기 해외연수

제1조(목적) 참여대학원생들이 선진국의 외국 대학에서 장기체류를 통해 학위논문 프로젝트의 공동연구 또는 실험에 참여하여 국제적 시각의 논문작성 및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조(연수비 지원)

- ① 항공료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하여 실비 지급한다.(예산범위 이내)
- ② 30일 초과 해외연수 시 해당기간 대학원생 지원비 지급은 제한한다.
- ③ 장기해외연수 해당기관과의 협약 체결 하고 공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출해야한다. 약식으로 해당 기관의 초청장과 프로그램 등 증빙자료 제출로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3조(연구결과)

- ① 연수 후 영문보고서를 소정양식에 따라 귀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 제출은 SCI(E)급 논문 또는 국제학술회의로 귀국 이전에 논문을 제출해야 하며 귀국 후 1년 이내에 게재되도록 해야 한다.
- ③ 귀국 후 귀국보고서에 논문을 첨부해 제출하며 발표회에서 간단한 발표를 해야 한다.

제4조(선발대상 및 기준)

- ① 본 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는 참여대학원생으로 전년도 연구실적이 상위 30% 이상인 대학원생에 대해 어학능력 점수를 고려해 사업팀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전년도 연구실적 평가 전일 경우 또는 신규대학원생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절 대학원생 단기 해외연수

제1조(적용범위)

- ① 대학(원)생이 공동팀을 구성하여 연구결과 발표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단기간 국제공동연구 수행, 워크숍 등 국제회의 참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외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참여대학원생의 최신 지견 습득의 기회 확대를 위해 한 학회 당 3인 이내의 단순 참가도 허용한다.
- ②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을 위한 단기연수일 경우 연수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으로 해당기관의 초청장과 프로그램 등을 제출로도 진행 가능한 것으로 한다.

제2조(연수기간) 단기 해외연수의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제3조(연수비 지원) 단기 해외 연수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선발대상 및 기준) 참여대학원생이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단기연수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할 경우 지도교수는 성적과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참가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3절 해외석학초빙

제1조(운영)

- ① 당해연도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고 사업팀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② 초빙된 해외학자는 사업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의 국제협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및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대학원생의 국제적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제2조(지원범위) 해외석학을 초빙하는 경우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항공료 : 비즈니스 클래스까지 지원
2. 체재비 :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나 단 숙박비(조식포함)는 특급호텔까지 실비 정산 가능
3. 기타경비 : 강연료, 세미나비 등

제7장 보수규정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앙대학교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 관리지침 중 보수제도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팀교직원의 구분) 사업팀 계약교수, 사업팀박사후연구원, 초빙교수 및 사업팀 직원으로 한다.

제3조(보수) 사업팀 교직원의 보수체제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월급여를 13개월로 곱한 것을 연봉으로 한다.

- ① 사업팀계약교수는 4단계 BK21 신진연구인력 최저 인건비 이상으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 사업팀박사후연구원은 월 300만원 이상으로 하고,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③ 사업팀직원의 연봉은 사업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장이 결정하고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계약한다.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업팀 교직원의 업무에 따라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 개최 혹은 사업팀 국제 학술대회 개최 등 주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업무추진비는 교내 대응자금 (간접비) 예산에서 직접비 연구수당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8장 지적재산권

제1조(목적) 본 장은 중앙대학교 4단계 BK21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의 특허권 및 그 양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중앙대학교 생물리광화학 창의인재 양성 사업팀 소속 교수의 연구와 관련한 특허출원은 중앙대학교 특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성과급

제1조(운영)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에 대해 사업팀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연구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인정받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 ② 생물리과학학분야의 활동 중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산학협력, 특허 등의 우수한 성과를 낸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 ③ 사업팀 참여도 및 기여도가 높은 교수, 신진연구인력, 대학원생

제2조(평가기준)

① 교수 : 사업팀의 지원예산대비 논문, 특허, 연구비수주 등의 연구업적 및 교육연구단 기여도 실적 순위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한다. 사업비에서는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개정 2022.02.01>

㉞ 참여교수 연구업적 평가는 4단계 BK21 연구업적 평가 방식을 따른다.

연구실적 산정 시 논문 및 특허 게재(출원)일을 포함한 실적 리스트를 첨부한다.

- ㉠ 실적 평가 기간은 매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 소속이 명시되어있는 SCI(E)급 논문으로 한다.
- ㉢ 연구비는 BK21 FOUR 사업에서 산정하는 방식을 따른다.
- ㉣ 기술이전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경유한 경우만 인정한다.
-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게재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인쇄발행된 것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참여교수 사업팀 기여도 평가는 다음과 같다.

- ㉠ 실적 평가 기간은 매 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 사업팀 기여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 참여교수 실행실 대학원생의 사업팀 기여도도 포함하여 고려한다.
- ㉥ 참여 교수의 실적점수는 연구업적 50%, 사업팀 기여도 50%로 합산하며 이를 사용한 성과급의 적용공식은 다음과 같다.

참여교수 성과급 = (참여교수 개인점수/총점수(참여교수)) × 지원액

② 대학원생 :

㉞ 참여대학원생간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학원생 지원 항목 내에서 참여대학원학생의 논문실적과 학술회의 활동 그리고 사업팀의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다. 참여대학원

학생의 실적점수 적용 공식은 4단계 BK21 연구업적 평가 방식을 따른다.

연구실적 산정 시 논문 및 특허 게재(출원)일을 포함한 실적 리스트를 첨부한다.

- ㉠ 실적 평가 기간은 전년 8월 1일부터 당년 7월 31일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21.08.01.>
-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 소속이 명기가 되어있는 논문으로 한다.
-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게재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출판된 논문의 경우 인정함)
- <개정 2021.08.01.>

㉤ 그 외 사업팀의 기여정도는 사업팀장과 다른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참여 대학원생의 실적점수를 사용한 성과급의 적용공식은 다음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 지급액 조율이 가능하다.

참여대학원학생 성과급 = 참여학생 개인점수/총점수(참여대학원학생) × 지원액

㉦ 연구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뽑아 “우수 연구상”을 수상하며 인원 및 포상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참여 대학원생의 주저자 논문, 주발명자 특허, 학술대회 주발표자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수 연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인센티브 지급으로 월별 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일시 지급하지 않고 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한다.(단 잔여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분할지급이 불가능할 경우 일시 지급 후 해당년도 사업기간 중 균등하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신진연구인력

㉞ 신진 연구인력 지원비항목 내에서 연구실적과 사업팀에 참여 정도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에서 평가하여 성과급을 매월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연구실적 산정 시 논문 및 특허 게재(출원)일을 포함한 실적 리스트를 첨부한다.

- ㉠ 실적 평가 기간은 매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 ㉡ 주저자 논문은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대학의소속이 명기가 되어있는 SCI(E)급 논문으로 한다.
- ㉢ 근거를 밝힐 수 있는 연구업적자료의 표지, 게재확인서 또는 첫 페이지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일자기준으로 인쇄발행된 것만 인정함)
- ㉤ 그 외 사업팀의 기여정도는 사업팀장과 다른 참여교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신진연구인력 중 주저자 논문, 주발명자 특허, 학술대회 주발표자 중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성과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 신진연구인력 성과급의 인원 및 금액은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업팀 직원

㉞ 사업팀전담 행정직원은 간접비 행정인력 성과급 한도 내에서 사업팀 업무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수 있다. 사업팀 직원의 근무 실적은 사업팀장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한다.

㉠ 실적 평가 기간은 매 년 3월부터 당해 사업기간 종료일인 2월 말까지 1년 단위로 한다.

㉔ 사업팀 직원의 성과급 금액은 평가기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장 기 타

제1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 BK21 FOUR사업 운영지침 및 중앙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 사업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